

의안  
번호

4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3. 19.

전문위원 김 동 성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정해숙의원 외 12명
- 나. 의안번호 : 제435호
- 다. 제출일자 : 2025. 02. 28.
- 라. 회부일자 : 2025. 03. 13.

## 2. 제안이유

-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신 청년들이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법적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구정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도움과 사회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험을 제공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근무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활동확인서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3. 06. ~ 2025. 03. 12.
  - 의 견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제정안은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대상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성북구는 2018년부터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청 참여와 일 경험을 제공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 12월 기준, 총 1,400명(연간 200명)이 참여하여 공공분야 취업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에게 행정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 □ 주요 내용

- 안 제1조(목적)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대상)에서는 사업 대상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1)에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

기존에 행정인턴 모집 시 모집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함으로써 비(非)대학생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대학 이상의 학력의 필요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sup>2)</sup>와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sup>3)</sup>는 학력에 의한 차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인턴 모집 시 비(非)대학생 차별> 사건에 대해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2023. 4. 18.) 권익위원회는 권고 과정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가계 안정 및 재정자립 도모’라는 행정인턴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점, 행정인턴 수요기관의 사업 내용 및 자격요건 상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대학에 재학중이어야만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 인턴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된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며 시정을 권고함.

- 이에 성북구는 2025년부터 사업명칭을 ‘청년 구정체험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변경하고 대상 연령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4)에 따른 19세에서 29세 성북구 거주 청년으로 변경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여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사업 변경내용						
구분	기존			변경		
사업명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년 구정체험 아르바이트		
모집인원	상·하반기 총 200명			상·하반기 총 220명		
모집대상	일반 (85)	성북구 거주 대학생(19세~39세)		일반 (95)	성북구 거주 청년(19세~29세)	
	우선 (15)	성북구 거주 대학생 중 사회적 배려 필요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우선 (15)	성북구 거주 청년(19세~29세) 중 사회적 배려 필요 대상자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안 제3조(운영시기)와 제4조(근무방법 등)는 사업 운영 시기를 매년 2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근무 방법에 대해서는 구 분청, 소속기관, 동 주민센터, 그리고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자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함.

3)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학력에 의한 차별> 의안에 대해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 결정을 원안 가결한 바 있음.(2023. 11. 17.)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안 제5조(수요조사)는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행정체험단의 재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 안 제6조(신청)와 제7조(대상자 선발)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대상자 선발은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인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임금기준)부터 제10조(활동확인서 교부)까지는 임금 기준과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확인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그동안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함으로써 비(非)대학생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기관 직무 경험을 통해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조례명과 집행부 사업명이 상이하므로, 조례 제정 후 사업명을 조례와 동일하게 사용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